지평지성 Newsletter

■ 최신 법령 ■

[금융]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이승현 변호사 | 구동균 변호사

1. 제정 이유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은 주로 기업어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으로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어음 유통시장의발전 및 기업어음 발행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단기자금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어음의 단기자금조달이라는 경제적 목적은 유지하면서 현재 기업어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동법이 2011년 7월 14일 제정되었고, 2013년 1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운영 주체 및 전자단기사채 관리체계(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전자단기사채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이 제도의 운영 주체가 되며, 전자단 기사채의 발행인 또는 권리자는 제도의 운영 주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됨.

지평지성 Newsletter

- 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유통 및 말소 절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수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단기사채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말소 등은 권리자가 해당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 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권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신이 계좌를 개설한 기관에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등을 신청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전자단기사채 권리자 보호(제21조 및 제22조) 라.

>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 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 위를 금지함.

3. **다운로드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855호, 2013. 1. 15. 시행 예정)